

## 1. 부가가치세제 현황과 금융환경의 변화

-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,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음
  - 이는 도입 당시 영업세제하에서 1%로 부과되던 이자에 대하여 10% 이상의 고세율을 부과하기 어려웠고,
  -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주로 기업에게 이루어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
  - 대출차별 구분과세방식은 도입 목적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
  
- 다른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
  - 이론적으로 이자는 부가가치가 아닌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 간의 이 전지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 존재
  - 과세하더라도 환급으로 인해 세수효과가 크지 않고 세무행정비용만 증가
  - 과세기술상 수수료적인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는 것이 어려움
  
-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금융환경 변화
  - 국제화와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및 업무영역 제한 완화
  - 신종금융기법 및 상품·서비스의 등장
  - 컨설팅 등 다양한 부수업무 수행,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 외부화
  
- 따라서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

## 2. OECD 회원국의 사례

- OECD 회원국들도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,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음
  - 자금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는 대부분 면세지만, 수집화폐의 공급은 과세대상
  - 대출관련 서비스는 면세지만,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대출은 과세대상
  -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실물인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
  - 일반적으로 채무가 매각되고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채무 팩토링은 면세인 반면, 악성채무자에 대한 관리 및 추적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대상
  
- 서비스별로는 금융리스, 채권추심, 보호예수, 투자자문, 손해사정, 수탁서비스,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다수 국가가 과세
  -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과세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, 멕시코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과세하는 영역이 많음
  
-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은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 논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
  - 정치적인 부담, 납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의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전면적인 개편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

### 3. 시사점

- 이자 등 금융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, 현실적으로도 과세가 어려움
  - 그러나 수수료 성격의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OECD 회원국들에서 과세하고 있음
  - 따라서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를 통해 network 효과 제고 필요
  -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세율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
  
-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고려 기준
  - 서비스 대가가 이자나 투자자의 수익 등과 구분되고, 가격의 전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
    -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분이 용이하고, 패키지(package)화 등을 통해 과세분야의 가격이 면세분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
  -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서비스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여부
    - 대체 서비스와의 거래 왜곡 방지를 위해 고려
  - VAT Group에 대한 고려
    - 서비스를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인 금융그룹 모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,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in-house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세제상의 중립성 유지 필요
  - 기타 금융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인 고려